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680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6804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소21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 선고 2022. 9. 2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소2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7,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C은 2012. 8. 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C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

- 1) C은 2013.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이후 '서울회생법원'이 독립됨. 이하 '서울회생법원'이라 한다) 2013개회890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6.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 2) 서울회생법원은 2015. 1. 23. C에 대하여 변제계획(변제율: 원금의 92% 상당)을 인가하였는데, D에 대한 변제예정액은 확정채권액 원금 3,000,000원 중 2,766,33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D는 2017. 6. 30. C에 대한 채권(2017. 6. 8. 기준 원금 1,499,384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고, 2017. 8. 10.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 4) 서울회생법원은 2020. 3. 26. C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6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2020. 4.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

- 1) 원고는 2013. 6. 14. 청주지방법원 2013개회1188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2013. 12. 20.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시 D에 대한 채무 원금이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2) 청주지방법원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30. 청주지방법원에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채권의 원인: 2012. 8. 9. 주채무자의 D에 대한 신용대출 3,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 원금이 1,499,38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청주지방법원은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변제계획(변제율: 원금의 70% 상당)을 인가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은 위와 같고 변제예정액은 이 중 1,050,960원이었다.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은 2020. 4. 11.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20.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1,050,9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2020. 10.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주지방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는 C의 피고에 대한 원금채무만 포함되어 있고, 이자채무는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C은 2020. 3. 26.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3,000,000원 중 2,766,333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함으로써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4. 10. 면책결정 확정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중 1,050,96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 중 C이 변제하지 못한 원금 233,667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817,293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7,29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것이고, 위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이 무효, 취소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050,960원을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액 원금이 817,293원이었음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 원금이 1,499,38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상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존액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채무뿐만 아니라 이자채무까지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이 작성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1,050,960원 중 817,293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석동

판사김현주

판사임효빈